

2024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서울고용노동청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2024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목 차 CONTENTS

I.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4
1.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5
2.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6
3. 건물관리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7
II. 건물관리업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10
(건물관리업) 재해사례·기인물 분석 바탕의 위험성평가	11
1. 설비 점검 작업	12
2. 예초기 등 작업	13
3. 시설관리·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14
4. 이동식 사다리 작업	15
5. 시설관리·밀폐공간 작업	16
6. 계단에서의 작업	17
7. 바닥에서의 작업	18
8. 청소·창문 청소 작업	19
9.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20
10. 청소·고소작업대(차) 이용 작업	21
1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단부)에서의 작업	22



1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에서의 작업	23
13. 근로자 건강 관련 작업	24
Ⅲ.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25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26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도	27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28
4.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29
Ⅳ.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33
Ⅴ.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36
Ⅵ. 안전보건관련 서식	39
Ⅶ.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53

I

건물관리업 위험성평가

1.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2.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3. 건물관리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위험성평가 작성시 참고자료

이 책자에서는 건물관리업을 위한 쉽고, 간단한 위험성평가 방법을 안내하고 있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위치 **안전보건공단** <https://kosha.or.kr> **공단소개**

지역본부 및 지사 **서울광역본부** **알림마당자료**

▶ 위험성평가 작성시 참고자료

- 1)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예시)
- 2) 위험성평가 평가표 등 작성양식
- 3) 위험성평가 안내서 수록 각종 서식 (아차사고 사례 발굴보고서 등 8종)
- 4) 건물관리업중 중심 위험성평가 체크리스트(예시)
- 5) 안전보건경영방침(예시)

산업현장

위험성평가, 이렇게 하세요!

위험을 알아야 대책을 마련하고 안전이 확보됩니다.



누가 하나요?

주도



사업주

위험성평가가 실시되도록 사업주가 주도하여 총괄 관리

참여



- 안전보건관계자
- 관리감독자(직장·조장·반장·팀장 등)
- 일반근로자
- 협력업체 관계자



언제 하나요?

1 최초평가

사업장 성립(또는 실착공) 후, 사업장 가동, 공사의 진행 등 1개월 내 착수함을 기준으로 하되, 평가의 실효성이 확보되는 시기에 적절하게 시행

2 정기평가

매년 위험성평가 결과의 적정성 재검토

3 수시평가

설비·물질 신규 도입 또는 산업재해 발생 시

선택

새로운 평가 방식

②+③을 갈음하는 새로운 평가

2 상시평가 (월·주·일 단위로 일상화된 안전활동)

월(月) 1)노사합동 순회점검 2) 아차사고 분석 3) 제안제도 실시 → 평가

주(週) 원하청 합동안전점검회의 → 이행확인 및 점검

일(日) 작업 전 안전점검회의(TBM) → 공유



어떻게 하나요?

사전준비

- 실시규정 작성
- 담당자·참여자 선정
- 사고사례 수집 및 분석

유해·위험요인 파악

- 노사합동 순회점검
- 아차사고 분석
- 제안제도 실시

위험성 결정

- 위험성 수준 판단 및 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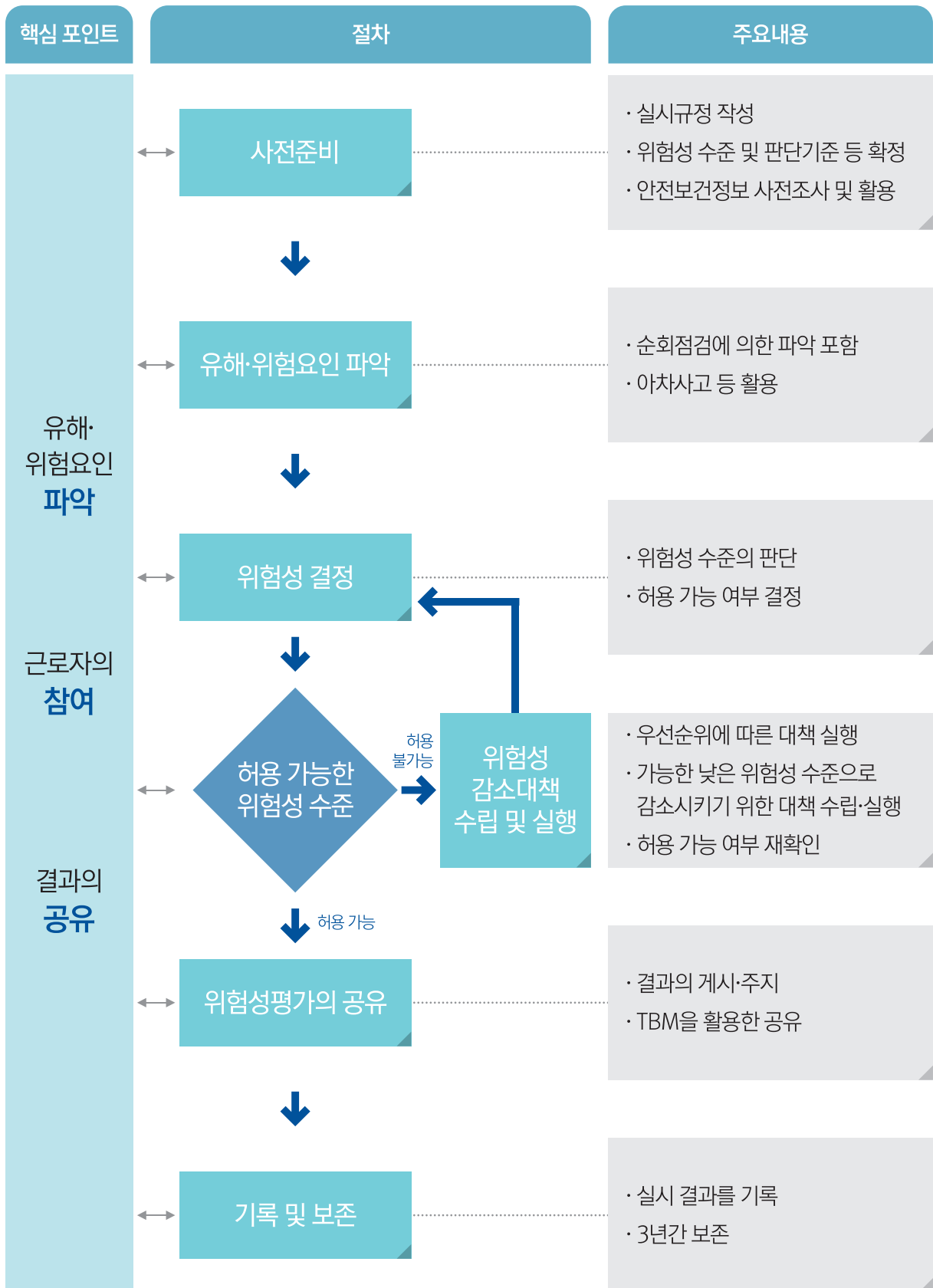
위험성 감소대책 수립 및 실시

- 우선순위에 따른 대책 수립 및 실행

공유·기록

- TBM, 교육 등을 통해 공유 및 기록

위험성평가 절차 및 주요내용



건물관리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시설관리업무

시설관리업무는 주로 전문적인 기술을 가진 작업자들이 수행한다. 건물의 냉난방, 공기정화설비의 유지·보수, 급배수·오수·위생·가스설비 등의 유지·보수,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주차설비 등의 유지·보수, 건물 내수·배전, 조명 등 전기설비의 유지·보수업무 등이 있다.

시설관리업무 분류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수변전 및 전동기 제어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충전부 노출에 의한 감전 - 설비 점검 중 전원 투입으로 인한 감전 - 과열·과부하에 의한 화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절연덮개 설치 등 충전부 방호조치를 실시함 - 설비 점검·보수를 할 때는 전원 차단 후 실시함 - 전기 설비의 주기적 점검·유지·보수를 실시함 - 외부인은 관리자와 함께 출입함
펌프류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종 펌프류 조작 시 감김·끼임 - 밸브류 오작동으로 인한 재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함 - 밸브 개폐방향을 표시해 오작동을 예방함
정화조 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소결핍 및 유독가스에 의한 중독 - 정화조 내 떨어질 위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밀폐공간 작업 전 유해가스 농도를 측정함 - 밀폐공간 작업 시 환기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송기마스크 등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함 - 밀폐공간 작업 시 감시인을 배치, 작업자와의 연락체계 구축, 출입인원을 점검함 - 추락 예방을 위한 안전난간을 설치함
통행 및 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 및 통로 상에 물기, 이물질 및 돌출부에서 넘어짐 - 계단에서 미끄러져 넘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통로 정리정돈을 실시함 - 미끄럼 방지 스티커 설치 등 조치를 실시함
승강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임의 조작에 따른 감김·끼임 - 임의 개방에 의한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자 외 출입금지 조치함 - 유지·보수 전문가에 의한 점검을 실시함
보일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착화 불량으로 인한 역화 - 이상 운전으로 인한 파열·폭발 - 절연 파괴 및 전선 손상에 의한 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올바른 보일러 취급 작업을 실시함 - 안전밸브는 최고 사용 압력 이하에서 작동함 - 주기적인 유지·보수를 실시함 - 접지 실시, 절연보호구를 착용함
이동식 전기기계·기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기기계·기구 사용 시 누전으로 인한 감전 - 배선 또는 이동전선의 절연피복 손상 또는 노후됨으로 인한 감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중 절연 구조의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함 - 누전차단기를 설치함 - 충분한 절연 효과가 있는 이동전선 등을 사용함
연삭기 등 기계·기구 취급작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삭기 사용 시 감김·끼임·물체에 맞음 - 용접작업 시 감전 - 동력전달부 접촉으로 감김·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삭기에 방호덮개를 설치함 - 교류 아크용접기에 안전장치를 설치함 - 동력전달부에 방호덮개를 설치함

건물관리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미화관리 업무

미화관리 업무는 건물 내 사무실 바닥, 복도, 화장실 등을 세정제, 박리제, 왁스 등을 사용해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것을 말한다. 건물 외벽을 정기적으로 청소하는 업무, 건물의 주차장 등 부대시설에 대한 일상적인 청소 업무, 건물 및 부대시설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등을 수거하고 분리하는 등의 업무가 있다.

미화관리업무 분류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복도·바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미끄러운 바닥 청소 중 물기에 의한 넘어짐 - 청소용 세제·왁스 등에 의한 넘어짐 - 청소용 기계·기구 사용 미숙으로 인해 감전, 넘어짐 - 쓰레기, 청소 물품 등의 중량물을 인력으로 운반 중 요통 - 인산, 계면활성제, 모노에틸아민 등 청소용 세제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함 - 물이나 왁스 청소 등에 의해 미끄러운지 확인함 - 복도 및 바닥에 고여 있는 물기를 제거함 - 미끄럼 방지 장화 및 안전화를 착용함 - 무거운 물건을 옮길 때는 2인 1조로 작업함 - 무거운 물건은 어깨 높이 이하로 보관함 - 청소용 세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중 통풍을 철저히 하며,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함
천장 등 구조물 및 유리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천장·유리창·천장 환풍기 등의 청소 중 사다리에서 떨어짐 - 엘리베이터 청소 중 의자에서 떨어짐 - 건물 구조물, 현관문, 창문 청소 중 끼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다리 대신 고소작업대, 계단식 발판 등 안전한 발판을 작업대로 사용함 - 출입문 및 유리창 근처에서 작업 시 '청소중 사용 금지' 등의 표지를 부착하고, 작업대 사용 시 이용자들의 출입을 금지함
계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중 물기, 청소용 세제 왁스, 바닥 이물질 등에 의한 넘어짐 - 불편한 자세로 장시간 계단청소 중 요통 - 인산, 계면활성제, 모노에틸아민 등 청소용 세제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계단의 상향으로 이동하면서 계단 청소를 진행함 -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사전에 제거함 - 물이나 왁스 청소로 인해 미끄러운지 사전에 확인함 - 청소용 세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중 통풍을 철저히 하며,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함
화장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중 물기, 청소용 세제·왁스, 바닥 이물질 등에 의한 넘어짐 - 화장실 청소 중 화장실 문에 부딪힘·끼임 - 세면대 위에 올라가 청소하던 중 떨어짐 - 인산, 계면활성제, 모노에틸아민 등 청소용 세제 (화학물질) 사용 시 건강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함 - 물이나 왁스 청소 등에 의해 미끄러운지 확인함 - 복도 및 바닥에 고여 있는 물기를 제거함 - 미끄럼 방지 장화 및 안전화를 착용함 - 화장실 변기 및 세면대 청소 시 신체의 중심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한 손으로 변기 및 세면대, 이외의 구조물을 활용해 몸을 지탱하면서 작업함 - 보호복,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 청소용 세제 사용 시 충분히 환기하고, 사용 중 통풍을 철저히 하며, 방진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함
왁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청소 중 물기, 청소용 세제·왁스, 바닥 이물질 등에 의한 넘어짐 - 청소용 기계·기구 사용 미숙으로 인해 감전, 넘어짐 - 청소용 기계·기구 사용에 따른 근골격계질환 - 박리제, 광택제 사용으로 인한 건강장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려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을 제거함 - 왁스 작업 동선을 미리 파악한 후 작업 실시함 - 미끄럼 방지 장화 및 안전화를 착용함 - 자동바닥세정기에 작업자 이외의 접근을 제한함 - 자동바닥세정기의 배선 및 이동식 코드릴 등에 대한 절연 접지 상태를 확인함 - 청소용 세제 사용 시 충분한 환기를 하고, 사용 중 통풍을 철저히 하며, 마스크 등의 보호구를 착용함 - 보호복,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등의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건물관리의 작업별 유해·위험요인과 안전수칙

경비업무

경비업무는 건물 내·외부 또는 주변을 순찰, 감시, 보안 등의 경비업무와 입주인 안전관리, 안내 등이 있다. 또한 건물 또는 부대시설에 차량 진입 유도, 주차장 순회 점검 등의 주차 관리 등을 수행한다. 업무 특성상 고령의 남성 근로자가 교대 근무로 근무하는 사업장이 대부분으로 뇌·심혈관계 질환, 근골격계 질환이 가장 많이 발생한다. 또한 순찰 중 미끄러짐, 떨어짐, 뇌·심혈관계 질환 등의 재해위험, 기기·주차 등 시설관리 작업 중 떨어짐·끼임·부딪힘, 청소·분리수거 등 환경미화 작업 중 미끄러진·배임·요통이 발생한다.

경비업무 분류	유해·위험요인	예방대책
순찰·감시·보안	- 미끄러운 바닥 또는 턱 걸림에 의한 넘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동통로에 조도 75Lux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을 설치하고, 조명시설 확보가 어려우면 휴대용 조명기구를 사용함 - 계단 끝부분에 고무패드, 돌기부분 등 미끄럼 방지조치를 함 - 바닥 물기, 엔진오일 등의 기름기는 발견 즉시 제거하고, 미끄럼 방지 안전화를 착용함 - 무거운 물건을 들고 이동할 때는 경사로를 이용하고, 2인 1조로 작업함 - 문턱은 눈에 잘 띄고 색으로 도색하거나 턱이 없는 구조로 개조함 - 손수레는 인력 운반에 적합한 중량과 부피 이하로 적재하고, 과속방지턱은 최대한 서행하거나 우회함 - 재활용품 정리 시에는 비닐봉지 등 미끄럼 유발물질을 먼저 분리함
고소작업	- 사다리 작업 및 전지 작업 시 떨어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떨어짐 위험이 있거나 고소작업을 할 때는 작업 환경에 적절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를 사용함 - 사다리 작업이 불가피 할 때는 2인 1조로 작업함 - 전지작업 시 안전한 작업위치에서 안전모, 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하고 고지톱, 고지가위 등 적절한 도구를 사용함 - 전구 교체작업 시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 보호구를 착용함
중량물 취급 작업	- 중량물 취급 작업 시 근골격계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평상시 및 작업 전·중에 스트레칭으로 근골격계의 유연성과 근력을 증가시킴 - 가급적 중량물 취급을 피하고 능력에 맞게 작업속도를 조절함 - 적정 중량을 초과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2인 1조로 운반하거나 대차 등 보조기구를 활용함 - 중량물 취급 시 발은 어깨 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 힘을 사용함 - 규칙적인 운동을 실시함
교대근무	- 과로 및 스트레스 등으로 인한 뇌·심혈관계 질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및 비만을 조절을 위해 규칙적·정기적으로 운동을 함 - 과로와 스트레스로 지친 몸과 마음의 회복을 위해 취미생활을 갖고 업무 중 틈틈이 스트레칭을 함 - 심혈관질환 등으로 돌연사 예방을 위해 담배와 술을 멀리함
안내·주차 관리	- 민원 등으로 인한 감정노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원 및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을 마련하고 교육함 - 주민들이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 안내 및 관련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함

II

건물관리업 재해사례 중심 위험성평가 방법 안내

(건물관리업) 재해사례·기인물 분석 바탕의 위험성평가

1. 설비 점검 작업
2. 예초기 등 작업
3. 시설관리·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4. 이동식 사다리 작업
5. 시설관리·밀폐공간 작업
6. 계단에서의 작업
7. 바닥에서의 작업
8. 청소·창문 청소 작업
9.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10. 청소·고소작업대(차) 이용 작업
11.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단부)에서의 작업
12.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에서의 작업
13. 근로자 건강 관련 작업



(건물관리업) 재해사례·기인물 분석 바탕의 위험성평가

■ 건물관리업 13개 위험성평가 대상 주요업무

직종	작업내용	재해유형	작업 예시
1 시설	설비 점검 작업	승강기에 끼임·추락, 보일러 폭발·가스 누출 등	승강기 점검, 보일러 점검 등
2 시설	예초기 등 작업	풀 베기 등 작업 시 맞음, 베임	풀 베기, 잔가지 정리, 전지작업 등
3 시설	시설관리·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주차용 리프트에 끼임·추락	주차장 감지기 교체, 주변청소, 점검 등
4 시설	이동식 사다리 작업	작업 중 사다리에서 추락	천장형 유도등 교체, 전지작업, 유리청소 등
5 시설	시설관리·밀폐공간 작업	집수정 내 작업 중 질식	집수조, 정화조, 맨홀, 폭기조 출입 등
6 청소	계단에서의 작업	계단에서 전도	계단 청소, 왁싱, 중량물 이동 등
7 청소·경비	바닥에서의 작업	바닥에서 전도	순찰, 경비, 청소 업무 중 미끄러운 바닥 이동
8 청소	청소·창문 청소 작업	창문 청소 중 추락	창문 청소, 유리창 교체
9 청소·경비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차량에 충돌	계단 청소, 왁싱, 중량물 이동 등
10 청소	청소·고소작업대(차) 이용 작업	고소작업대에서 추락	건물 외벽 청소, 코킹작업, 도장 작업 등
11 경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단부)에서의 작업	작업 중 단부에서 추락	난간이 없는 단부에서 순찰, 경비 업무
12 경비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에서의 작업	작업 중 개구부에서 추락	개구부 근처에서 순찰, 경비, 청소 업무
13 시설·청소·경비	근로자 건강 관련 작업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재해, 야간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	화학물질 취급, 야간 교대작업 등



1 | 설비 점검 작업

(위험성평가 대상) 승강기 점검 작업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승강기 점검·보수 시 작업자 외 사람의 승강기 임의 조작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검·보수 시 접근금지 표지판 부착 <input type="checkbox"/> 점검·보수 시 동력원 차단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의 점검·검사를 받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기적 점검·검사 실시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험성평가 대상) 보일러 점검 작업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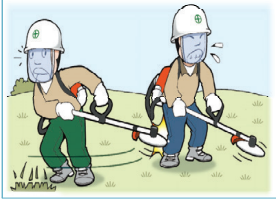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화재·폭발 및 가스 누출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화 전 충분한 환기 실시 <input type="checkbox"/> 사용물질에 적합한 가스감지기 설치 <input type="checkbox"/> 설정 압력은 보일러의 최고 설정 압력 이하 설정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급수탱크 수위 확인 <input type="checkbox"/> 안전장치(압력제한스위치, 안전밸브, 고저수위 조절장치, 압력계, 자동경보장치, 화염검출기 등) 정상작동 여부 정기적 확인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보일러 점검 시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안전운전절차 마련 및 준수 <input type="checkbox"/> 보일러 소음 차단 위해 귀마개 착용 <input type="checkbox"/> 전문가 외 보일러 수리·정비·청소 등 금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정기적으로 전문업체의 점검·검사를 받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정기적 점검·검사 실시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2 | 예초기 등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예초기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킥백 현상이 발생해 튕긴 예초기 날에 다른 작업자가 맞음</p>	<input type="checkbox"/> 예초기 등을 사용한 () 작업 《예시》 풀 베기, 잔가지 정리, 전지작업 등 <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
 <p>전지작업 중 말벌에 쓰임</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2명 발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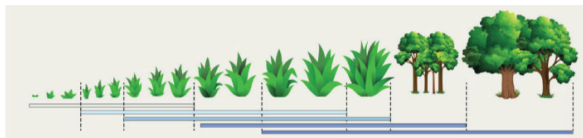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작업 장소 주변에 벌집이 있는지 사전 확인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장소 내 벌집을 안전하게 제거 - 관할 119안전센터에 신고 등 <input type="checkbox"/> 벌집 제거가 곤란할 시 작업 금지 <input type="checkbox"/> 벌, 해충 등에 대한 약제 및 기피제 지급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예초기 방호장치는 정상적으로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날 접촉 예방장치 설치 <input type="checkbox"/> 날 접촉 예방장치가 없는 경우 작업 금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벌 방충복(벌, 모기 등 벌레의 침입을 막기 위한 보호복) 착용 <input type="checkbox"/> 밝은 색상의 긴소매 착용으로 피부노출 최소화 <input type="checkbox"/> 예초작업용 보호구(안전모, 안면/무릎보호대 등) 착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자료

1. 소방청 공식블로그



나일론날	2날	3날	4날	5날	톱날
• 연하면서 키작은 잡초	• 연하면서 키작은 잡초	• 비교적 키작은 잡초	• 키작은 잡초	• 억센 잡초	• 직경 5~10cm 이하 관목
• 장애물이 많은 장소에서도 작업 가능	• 작업속도가 빠름	• 일정한 높이로 작업 가능	• 일정한 높이로 작업 가능	• 일정한 높이로 작업 가능	• 조림예정지 정리작업에 사용가능

• 예초기 작업에 따른 교육 실시

- 기계 사용법, 보호구 착용법, 사고발생 시 조치사항 등

• 개인보호구 지급·착용



안전모·보안면·귀마개 안전보호복 안전장갑 다리보호대 안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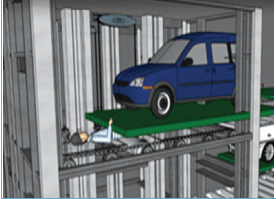

2. 소방청 보도자료(추석맞이 벌초 시 벌 쏘임 예초기 사고 주의보)



3 | 시설관리·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 (위험성평가 대상) 기계식주차장 관리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감지센터 점검 중 팔레트와 리프트 사이에 끼임</p>	<input type="checkbox"/> 기계식 주차장 관리업무 () 작업 <예시> 감지기 교체, 주변 청소작업 등 <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
 <p>에러 복구작업 중 대차와 리프트 사이로 떨어짐</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7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전원을 차단하지 않은 상태에서 주차설비 내부에 출입 가능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점검 및 청소 작업 시 운전정지(전원차단) 실시 ※ 출입 시 주 전원차단 후 「조작금지」 표지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출입문 연동장치와 비상정지장치를 설치하고 점검 <input type="checkbox"/> 위험경고, 출입금지 관련 안전보건표지 부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주차설비 내 조명 또는 채광이 충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주차설비 내 조명 또는 채광을 충분히 확보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관리인 선임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자동차 20대 이상 기계식주차장은 관리인 선임 필수 ※ 주차장법 시행령 제12조의10(기계식 주차장치 관리인 배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자료

□ (주차장치의 종류)





- ✔ “기계식주차장”이란 기계식주차설비를 갖춘 주차장을 말하며, 일반적으로 차로, 전면공지, 관리실 등을 포함한다.
- ✔ “기계식주차설비”란 기계식 주차장치와 그 장치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설치한 방향전환장치 등 부대설비를 포함하는 설비를 말한다.
- ✔ “기계식주차장치”란 주차장에 설치하는 주차장치로서 자동차를 주차할 장소로 이동시키는 기계 장치를 말한다.
- ✔ “운반기”란 기계식 주차장치에서 자동차를 운반하는 부분을 말하며 반기, 카고, 케이지, 트레이, 팔레트 등으로도 불리며, 순환식이나 2단 주차장치 등에서는 주차구획으로도 쓰이는 말이다.



4 | 이동식 사다리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이동식 사다리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전지작업 중 떨어짐</p>	 <p>감지기 교체 중 떨어짐</p>	<p><input type="checkbox"/> 이동식 사다리를 이용한 () 작업</p> <p>〈예시〉 천장형 유도등 교체, 전지작업 재활용품 수거작업 중 상부 박스 정리, 현관 유리창 청소 등</p> <p><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p>
 <p>유도등 교체 중 떨어짐</p>	 <p>상부 박스 정리 중 떨어짐</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24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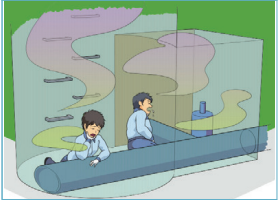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발판 및 디딤대 위에서 작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대 또는 안전난간 부착된 말비계 작업발판 사용 <input type="checkbox"/> 이동식 사다리 작업높이별 안전작업 지침 준수 <input type="checkbox"/> 기다란 가위 사용(전지작업) 등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사다리가 변형되거나 파손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다리 즉시 교체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사다리가 바닥에 제대로 고정되지 않아 기울어질 위험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사다리는 평탄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하고, 최대길이 3.5m 이하 A형 사다리 사용
▶ 사다리를 이용한 작업 시 중심을 잃을 가능성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인1조 작업 실시 <input type="checkbox"/> 안전난간이 없는 경우 안전대를 걸고 말비계 작업발판 사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5 | 시설관리·밀폐공간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밀폐공간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맨홀 내 펌프 보수 작업 중 산소결핍으로 인한 질식</p>  <p>맨홀 내 점검 중 양수기 가동에 인한 일산화탄소 중독</p>	<p>□ () 작업</p> <p>〈예시〉 집수조, 정화조, 맨홀, 폭기조 등 내부 양수 작업, 설비 보수 작업, 설비 설치 작업, 단순 내부 점검 등</p> <p>□ 작업 수행자: _____</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3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사업장 내 밀폐공간을 알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 위치와 해당 공간의 유해요인 파악 <input type="checkbox"/> 파악된 밀폐공간은 목록화하여 관리 <input type="checkbox"/> 관계 근로자 외 출입을 금지하고, 표지 부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작업 허가절차를 마련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 작업의 경우 안전조치 여부를 확인하고 적절한 경우에만 작업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작업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개시/재개 전 산소 및 유해가스 농도 측정 ※ 산소 18~23.5%, CO2 1.5% 미만, H2S 10ppm 미만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충분한 환기를 실시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 전과 작업 중 급·배기 실시 <input type="checkbox"/> 최소 15분 이상(체적의 10배 이상) 신선한 공기로 환기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호흡용 보호구, 안전대, 구명밧줄, 구조용 삼각대 등 밀폐공간 출입 근로자에게 필요한 보호구를 지급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 기타()

참고자료



왜, 질식재해가 위험할까요?



숨을 쉬지 못하면 죽습니다.

사람의 신체 조직은 공기 중 산소를 필요로 하며, 숨을 쉬어 공기 중 산소를 체내로 가져오게 되는데 숨을 쉬지 못한다면 체내로 산소를 가져오지 못해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이를 '질식'이라고 합니다.

질식재해가 발생하면 2명중 1명은 죽습니다.



일반 사고성 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전체 재해자의 1.1%이나, 질식재해에서 사망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47.4%에 이르고 있어 2명 중 1명이 사망할 만큼 치명적입니다.



6 | 계단에서의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이동 등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input type="checkbox"/> 계단에서 () 작업 〈예시〉 청소(쓸거나 닦기, 왁싱 등), 중량물 운반, 층계 이동, 경비 순찰 등 <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
계단 청소 중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	바닥 물기, 이물질 등에 미끄러짐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1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방지하도록 유지·관리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턱이 있는 곳에 작업자 눈에 잘 띄도록 도색 <input type="checkbox"/>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 정리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건물 내 지하계단 등의 이동통로에 조명 또는 채광이 충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 지하계단 등 통로에 조명 또는 채광을 충분히 확보 <input type="checkbox"/> 조명이 충분하지 못할 경우 이동식 조명(휴대용 랜턴 등) 소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계단 청소 시 작업안전수칙을 준수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계단 청소 시 아래에서 위쪽으로 실시 <input type="checkbox"/> 슬리퍼 등 미끄러운 신발 대신 미끄럼방지장화 및 안전장갑 등 개인보호구 착용 <input type="checkbox"/> 물기 등을 이용한 청소 작업 시 “청소 중” 등 안내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계단 주위에 걸려 넘어질 위험이 없도록 정리정돈 실시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7 | 바닥에서의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바닥에서의 작업 또는 미끄러운 바닥 이동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바닥에서 넘어지거나 미끄러짐</p>	 <p>누수 점검 확인 중 우레탄에 미끄러짐</p>
<p>□ 바닥에서 () 작업 〈예시〉 순찰, 경비, 청소, 이동 등</p> <p>□ 작업 수행자: _____</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3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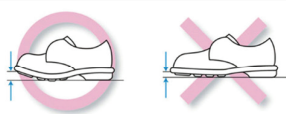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미끄러지거나 넘어짐을 방지하도록 유지·관리 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자가 이동 중 걸리거나 미끄러져 넘어질 위험이 있는 장애물 정리 <input type="checkbox"/> 이동경로 내 물기, 기름기 등 제거 <input type="checkbox"/> 턱이 있는 곳에 작업자 눈에 잘 띄도록 도색 <input type="checkbox"/> 미끄럼 방지 신발 착용 <input type="checkbox"/> 미끄럼주의 표지판 설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건물 내 복도 등 이동통로에 조명 또는 채광이 충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건물 내 복도 등 통로에 조명 또는 채광을 충분히 확보 <input type="checkbox"/> 작업장 내 조명시설 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 이동식 조명 (휴대용 랜턴 등) 소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참고자료

[작업별 조도 기준]

초정밀 작업 750 lux 이상 **정밀 작업** 300 lux 이상 **보통 작업** 150 lux 이상 **그 밖의 작업** 75 lux 이상

[넘어짐 재해 예방을 위한 신발 선택 요령]



신발의 유연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앞이 단단하고 잘 구부러지지 않으면 발에 무리가 가고 걸려 넘어지거나 미끄러질 위험이 있으므로 유연한 신발이 좋음 • 발에 피로가 쌓이면 관절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충격이 잘 흡수되는 신발이 좋음 	 <p>바닥과의 접촉면적이 넓어 안전하다 바닥과의 접촉면적이 좁아 불안정하다</p>
신발의 무게중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게중심이 발 끝에 있으면 걸려 넘어지기 쉬우므로 무게중심이 중앙에 있는 신발이 좋음 	 <p>일부분이 내려감</p>
신발 발끝 부분의 형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걸을 때 발을 충분히 들지 않으면 발끝 부분이 바닥이나 계단에 걸려 넘어질 수 있으므로 발끝이 어느 정도 올라간 형태가 좋음 	



8 | 청소·창문 청소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창문 청소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div> <p style="text-align: center;">창문/창틀 청소 중 떨어짐</p>	<input type="checkbox"/> 창문 청소 업무 관련 () 작업 〈예시〉 창문/창틀 청소 작업, 유리창 교체작업 등 <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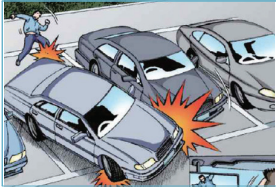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추락 방지조치가 충분한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시설(난간 등) 설치가 곤란한 경우에는 안전대를 지급·착용하고 고정된 구조물 등에 체결하여 작업 <input type="checkbox"/> 불안정한 행동(창틀에 올라서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등) 관리·지도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적절한 청소도구를 사용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한 방법으로 작업할 수 있도록 보조도구 등 사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는?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을 경우 안전모·안전대 등 개인보호구를 지급하고 올바르게 착용한 상태로 작업토록 지도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창호 외부 난간에 기대어 작업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창호 외부 난간에 기대어 작업하는 등 불안정한 자세로 작업 금지 ※ 창호 외부에 설치된 난간은 추락방지 용도가 아니므로 고정부 강도가 충분하지 않아 탈락에 따른 추락 위험이 있음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9 |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의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주차유도 중 차량에 부딪힘	<input type="checkbox"/> 차량이 통행하는 장소에서 () 작업 〈예시〉 주차관리, 청소작업, 순찰, 경비 등 <input type="checkbox"/> 작업 수행자: _____
 주차장 청소작업 중 진입하던 차량에 부딪힘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2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근로자와 차량 간 거리가 충분히 확보되어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이동 중인 차량과 일정 거리를 유지한 채 작업 <input type="checkbox"/> 주차 중인 차량 전·후단 이외의 공간에서 작업 <input type="checkbox"/> 차량 통행 장소에서 타 작업 시 “작업 중” 등 안내판 설치 <input type="checkbox"/> 차량이 주차구역 이외로 불시 이동하지 않도록 스토퍼 등 설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차량 내부에서 외부에서 작업하는 근로자가 잘 보이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자가 잘 보이도록 식별조끼 착용 후 작업 실시 <input type="checkbox"/> 야간순찰 시 야광조끼, 야광봉 등 지참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안전하게 작업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규정 속도를 지정하여 저속 운행 실시 <input type="checkbox"/> 운전자 시야확보를 위해 주차구역 이외에 주차 금지 <input type="checkbox"/> 사각지대에 반사경 설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참고자료

▶ 안전한 작업위치에서 차량 유도

- 출입차량의 주차차단기로의 유도 및 주차장 내 차량 유도 시 안전한 작업위치를 확인
- 차량 유도 시 다른 차량의 움직임을 확인

▶ 미끄럼방지 작업화 착용 및 정리정돈 실시

- 차량 유도 및 주차관리부스의 이동 시 물, 기름 등에 의한 넘어짐을 예방하기 위해 미끄럼방지 작업화를 착용
- 폭설 등 기상악화 시 염화칼슘, 모래 등을 비치하여 신속한 제설작업 수행
- 주차관리부스 내부 및 주변에 대한 정리정돈 실시

▶ 설비 점검·보수 시 차단기 개방 및 전원 차단

- 해당설비의 전원을 차단하여 충전부 접촉으로 인한 감전재해 예방
- 설비 이상 등으로 점검·보수작업 수행 시 차단기를 개방하여 작업을 수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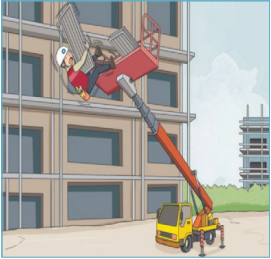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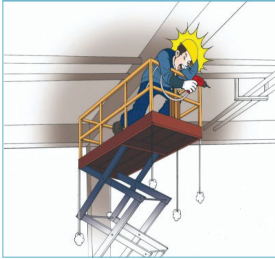




10 | 청소·고소작업대(차) 이용 작업



□ (위험성평가 대상) 고소작업대(차) 이용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건물 외벽 코킹 작업 중 고소작업차가 넘어 지면서 바닥으로 떨어짐</p>	 <p>고소작업대(시저형)의 과상승으로 안전난간 대와 구조물 사이 끼임</p>	<p>□ () 작업 〈예시〉 건물 외벽 청소, 외부 코킹 작업, 도장 작업, 균열보수 및 방수작업, 유리창 교체, 시설 하자보수 등</p> <p>□ 작업 수행자: _____</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1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안전인증 표시는 부착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인증 표시가 있는 제품 사용 ※ 2009년 7월 1일 이후 출고품 적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작업장소의 사전조사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해당 지형 사전조사(경사 및 지반침하 여부 등)실시 <input type="checkbox"/> 작업계획서 작성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전도될 위험에 대비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과부하방지장치, 모멘트 감지장치 등 설치 <input type="checkbox"/> 붐 인출 길이에 따른 각도, 적재하중 준수 <input type="checkbox"/> 아웃트리거 설치 및 사용(발판 수평유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작업방향 안전난간 해체 금지 <input type="checkbox"/> 안전모 착용, 안전대 부착설비 설치 및 사용 철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과상승방지장치가 설치되어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안전난간 상부로부터 60cm 이상 설치(작업자 신장 고려)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11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단부)에서의 작업



단부(斷部)란?

- 건물 옥상의 끝이나 옹벽의 끝, 통로의 끝과 같이 단차가 있는 부분 중 추락위험이 있는 가장자리를 말함

〈단부 예시〉

☞ 건물 옥상의 끝단부





☞ 옹벽의 끝단부



☞ 통로의 단부



□ (위험성평가 대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단부)에서의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시설점검을 위해 베란다로 내려가던 중 추락</p>	<p>□ () 작업 〈예시〉 순찰, 경비, 청소, 시설 점검, 근무지내 이동 등</p> <p>□ 작업 수행자: _____</p>
 <p>아파트 누수 관련 외벽 점검 중 바닥으로 떨어짐</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6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떨어짐 방호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단부) 등에 안전 난간, 울타리를 설치하는 등 방호조치 실시 □ 난간 설치가 어려운 장소의 경우 안전대 부착설비를 설치하고 안전대 체결하여 작업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해당 위치의 조도가 확보되었는가?	<input type="checkbox"/>	□ 안전하게 작업 및 통행할 수 있도록 조도 확보 ※ 통행용 75lux, 일반작업시 150lux, 정밀작업시 300lux 이상 확보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2m 이상) 인근에서 작업 시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 및 착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 기타()



12 |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에서의 작업



개구부(Opening, 開口部) 란?

- 바닥에 뚫린 구멍 또는 그 부분을 총칭하는 것으로 환기, 통행, 투시 등의 목적으로 바닥에 트인 부분을 말함

☞ 우수만홀





☞ 배수로 그레이팅



☞ 집수정



□ (위험성평가 대상) 추락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에서의 작업

사고사망사례	위험성평가 대상
 <p>저수조 청소 준비 중 개구부로 떨어짐</p>	 <p>경비원이 야간 순찰 중 건물 내 개구부로 떨어짐</p>
	<p>□ () 작업 〈예시〉 순찰, 경비, 청소, 시설 점검, 근무지내 이동 등</p> <p>□ 작업 수행자: _____</p>

* 최근 3년간 사고사망자 6명 발생

□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사업장 내 개구부를 파악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사업장 내 개구부 위치와 특성 파악 <input type="checkbox"/> 파악된 개구부는 목록화하여 관리 <input type="checkbox"/> 개구부 인근 관계자 외 출입금지 조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개구부 등의 방호조치를 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개구부) 등에 안전난간, 울타리 또는 안전 덮개 등 방호조치 실시 ※ 덮개 설치 시 안전하게 고정하고, 개구부 경고표지 부착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해당 위치의 조도가 확보되었는가?	□	<input type="checkbox"/> 안전하게 작업 및 통행할 수 있도록 조도 확보 ※ 통행용 75lux, 일반작업 시 150lux, 정밀작업 시 300lux 이상 확보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개구부 인근 작업 시 개인보호구를 착용하였는가?	□	<input type="checkbox"/> 추락위험이 높은 개구부 주변에서 작업 시에는 안전모 등 개인보호구를 반드시 지급 및 착용 후 작업 실시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	□ 기타()



13 | 근로자 건강 관련 작업

(위험성평가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용 작업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유해화학물질을 안전하게 취급·사용하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취급 화학물질의 유해성·위험성 및 올바른 사용방법 교육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방호조치 실시 <input type="checkbox"/> 개인보호구 지급 및 착용 지시 <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 보관 용기(소분용기 포함)에 물질명, 그림문자 등 경고표지 표기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화재 예방조치를 하였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유해화학물질을 화기 등 점화원에 접근, 가열, 마찰시키는 행위 금지 <input type="checkbox"/> 취급물질에 적합한 소화기 비치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위험성평가 대상) 야간 교대작업 및 고령 근로자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및 개선대책

• 평가자 : _____ • 평가일 : _____

유해위험요인(점검항목)	해당 여부	개선대책
▶ 야간작업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 야간작업자 ① 6개월간 밤 12시부터 오전 5시까지의 시간을 포함해 계속되는 8시간 작업을 월평균 4회 이상 수행하는 경우 ② 6개월간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 사이의 시간 중 작업을 월평균 60시간 이상 수행하는 경우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직무스트레스 요인 평가 및 개선대책 마련·시행 <input type="checkbox"/> 수면실 설치 <input type="checkbox"/> 적절한 휴식시간 부여 <input type="checkbox"/> 신규 입사자 배치전건강진단 실시 <input type="checkbox"/> 특수건강진단 실시 및 기록 관리 <input type="checkbox"/> 야간 작업일정 근로자 사전 공지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고령 근로자의 건강 관리를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하고 있는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일반건강진단 실시 <input type="checkbox"/> 진단 결과에 따른 유소견자 주기적 관찰 • 담당자 : _____ • 개선예정일 : _____
▶ 기타()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기타()

III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관리체계

1. 사업주가 알아야 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2.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도
3.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4.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사업주가 알아야 할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관리체계



안전보건경영방침

가.
나.

최고경영자(대표, 소장)

성명 :

안전보건담당자

직위 :
성명 :

관리감독자
(시설)

직위 :

성명 :

근로자(각 부서원)

관리감독자
(청소)

직위 :

성명 :

근로자(각 부서원)

관리감독자
(경비)

직위 :

성명 :

근로자(각 부서원)

도급사업
관리감독자

직위 :

성명 :

근로자

✓ 최고경영자

안전보건 업무 총괄

✓ 관리감독자

위험성평가 실시/
예산 집행, 산안법
제16조 업무

✓ 도급관리감독자

도급사 안전보건관리
절차 준수, 위험성평가

✓ 안전보건담당자

안전보건활동 절차작성,
이행실태 점검 및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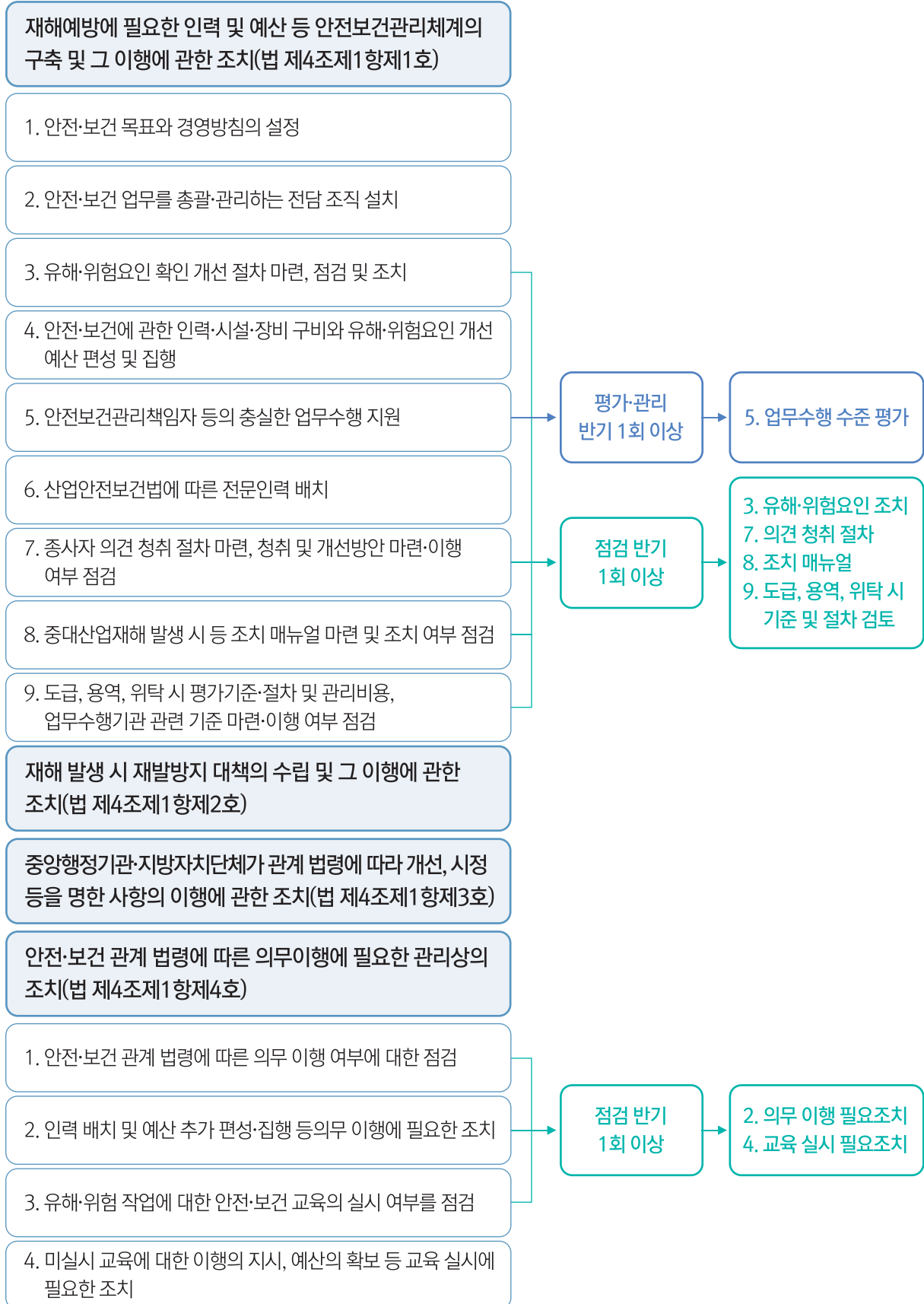
✓ 근로자

위험요인 확인, 제거 및
TBM 활동 참여

우리 회사의 안전·보건 확보 이행 확인

근로자 의견 청취	안전보건관리 책임자 업무 수행 평가	위험요인 확인·개선	비상조치 계획	도급사업장 수준평가	성과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무기명 제안제도 운영 • 아차사고 사례 수집 등 의견청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리감독자 등 안전보건 책임자 권한 / 예산 부여 • 평가기준 마련 및 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험요인 개선절차 마련 및 개선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대산업재해 발생 시 조치 매뉴얼 마련 및 이행 점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준평가 기준 및 절차 검토 • 도급사업 시 수준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전·보건 확보의무 이행평가
매월(수시)	반기1회	반기1회	반기1회	반기1회	년1회

중대재해처벌법 이행 체계도



안전보건관리 체계 구축을 위한 7가지 핵심요소

01

위험요인 파악

- 위험요인에 따른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합니다.
-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를 조사합니다.
- 위험기계·기구·설비 등을 파악합니다.
- 유해인자를 파악합니다.
-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을 파악합니다.

02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 위험요인별 위험성을 평가합니다.
- 위험요인별 제거·대체 및 통제방안을 검토합니다.
- 종합적인 대책을 수립하고, 이행합니다.
- 교육훈련을 실시합니다.

03

경영자 리더십

-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수립합니다.
- 안전보건에 필요한 자원(인력·시설·장비)을 배정합니다.
- 구성원의 권한과 책임을 정하고, 참여를 독려합니다.

04

근로자의 참여

- 안전보건관리 전반에 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 모든 구성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합니다.
- 자유롭게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문화를 조성합니다.

05

비상조치 계획 수립

- 중대산업재해 조치 매뉴얼을 마련합니다.
- 비상조치계획 및 대피훈련을 실시합니다.

0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 산업재해 예방 능력을 갖춘 사업주를 선정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운영 시 사업장 내 모든 구성원이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07

평가 및 개선

- 안전보건 목표를 설정하고 관리합니다.
- ‘안전보건관리체계’가 제대로 운영되는지 점검합니다.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1. 경영자 리더십>						
[1-1] 안전보건경영방침을 통한 경영자 의지 표명						
① 사업 또는 사업장의 특성에 맞는 모든 근로자(도급·용역·위탁 포함)의 안전보건 확보, 근로자 참여 활성화, 관련된 법규 준수에 관한 경영자의 의지가 반영된 방침 수립						
②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는 안전보건방침에 서명과 시행일을 명기하여 조직의 모든 구성원 및 이해관계자가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공표(인트라넷, 게시판 게시 등)						
[1-2]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						
① 사업장의 사업부서별 또는 작업단위별 구체적이고 측정 가능한 목표 설정						
② 안전보건 목표 달성을 위한 일정, 담당자, 예산 등을 포함하는 세부추진계획 수립						
③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추진계획에 대한 구성원 공개 및 변경사항 발생 시 수정						
[1-3] 안전보건 자원 배정 및 권한·책임						
① 안전보건관리를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조직체계를 별도 구축하고 있거나, 종사자 각 구성원별 안전·보건 권한 및 책임 부여						
② 안전보건구축을 위한 인력, 시설, 장비 구비를 위한 예산 반영						
③ 정부의 기술지도사업, 안전관리 전문기관 등 외부자원 활용방안 검토						
<2. 근로자의 참여>						
[2-1] 안전보건 정보 공개						
① 산업안전보건법령 요지, 위험성평가 결과, 안전보건 관련 회의 결과 공개·개시						
② 유해·위험기계·기구, 물질안전보건자료(MSDS), 산업재해·아차사고 발생현황 등 관련 정보 공유						
[2-2] 근로자 참여 절차 및 문화 조성						
① 안전보건 문제점, 개선방안에 대한 근로자의 공식적인 참여 절차 운영						
②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 시 인센티브 방안 마련 및 조치결과 공개						
③ 안전신고 및 제안 등 안전보건 근로자 참여에 대한 업무부담 또는 불이익 방지 조치						
④ 하청 및 파견, 공급업체 등 이해관계자를 포함하여 운영하는지						
⑤ 종사자 의견에 대한 개선방안 이행여부에 대해 점검(반기 1회 이상)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3.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파악>						
[3-1] 위험요인 파악 이행절차						
① 효과적인 위험성평가를 위한 실시규정* 등 작성 <small>* 목적 및 방법, 평가담당자 및 책임자의 역할, 평가시기 및 절차, 근로자 참여 및 공유방법, 결과의 기록보존</small>						
② 위험요인을 공정별·설비별·작업별 등으로 분류하여 정리						
③ 사업장 순회점검을 포함하여 사업장 특성에 적합한 유해·위험요인 파악						
④ 사업장 특성에 맞는 위험성평가 방법을 활용하여 위험요인별 위험성 수준 결정 및 우선순위 결정 실시 여부						
⑤ 최초·정기·수시평가 또는 최초·상시평가를 절차에 맞게 실시						
⑥ 유해·위험요인의 확인·개선이 이루어지는지 반기 1회 점검 후 필요 조치 또는 위험성평가 실시규정에 따른 이행 및 경영층 보고						
[3-2] 산업재해 및 아차사고						
① 산업재해 발생 시 재발방지대책을 포함한 '산업재해조사표' 작성 및 고용노동부 보고						
② 산업재해 또는 아차사고 조사 절차 수립						
③ 사고조사 시 안전보건담당자 및 해당 작업자 또는 동종유사 작업자 등의 참여						
④ 조사결과, 재발방지대책 및 개선여부에 대한 사업주/경영책임자 보고						
[3-3] 위험 기계·기구 및 유해인자						
① 사업장에서 보유한 위험기계·기구·설비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② 동종업계 산업재해, 아차사고 발생 기계·기구·설비에 대해 위험요인으로 분류하여 관리						
③ 사업장에서 보유한 물리적·화학적·생물학적·인간공학적 등 유해인자에 대한 관리대장 및 관리방안 작성						
[3-4] 화재·폭발·질식 등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별 위험요인						
① 5대 재해 유형(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위험장소 및 작업형태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절차 수립						
② 비정형작업(청소·정비·점검 등)에 대한 위험요인 파악						
③ 위험장소와 위험작업 조사 시 현장 작업자 참여						
④ 설비·생산공정 변경에 따른 위험장소와 위험작업에 대한 파악 실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4. 위험성평가: 위험요인 제거·대체 및 통제>						
[4-1] 위험요인별 위험성평가						
① 위험요인별 제거, 대체, 공학적대책, 행정적대책, 개인용보호구 순으로 개선방안 마련						
② 개선방안 마련 시 현장작업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담당자 등의 참여 여부						
③ 마련된 개선방안에 대한 사업주의 검토 여부						
[4-2] 개선방안 이행 계획 수립						
① 위험유형별 개선방안을 종합하여 담당자 지정, 개선예정일, 점검 주기 등 구체적인 개선방안 이행계획 수립						
② 개선방안에 수반되는 예산·인력 등에 대한 배정방안 마련 및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의 검토						
③ 개선방안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모든 구성원 공유 및 이행 여부						
[4-3]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의 공유						
① 위험요인 확인·개선 결과를 모든 구성원에게 작업 전 안전점검 회의(TBM) 등을 통해 적절한 방법으로 공유하고 있는지 여부						
② 위험성평가 결과에 대한 근로자 교육 실시						
③ 유해·위험한 작업에 관한 종사자 안전·보건 교육 실시 여부를 반기 1회 이상 점검 여부(직접 실시하지 않는 경우 점검이 끝난 후 지체 없이 결과를 보고 받았는지 여부)						
<5. 비상조치계획 수립>						
[5-1] 중대산업재해 조치매뉴얼 및 비상조치계획						
① 중대산업재해 발생에 대비한 조치 매뉴얼*이 마련되어 있고 이행여부를 점검(반기 1회 이상) * 매뉴얼 포함 내용: 작업중지, 근로자대피, 위험요인제거 등 대응 조치, 구호조치, 추가피해 방지조치, 비상연락체계, 해당작업중지, 노동관서 보고 등, 작업중지에 대한 불이익 조치금지 등						
② 끼임·충돌·화재·폭발·질식 등 사업장에서 발생 가능한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작성						
③ 중대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에 상황보고 및 전파체계, 조치별 대응조직 및 담당자의 역할을 적절히 구분						
④ 중대산업재해 시나리오 및 비상조치계획 매뉴얼을 구성원에게 교육을 실시						

안전보건 수준평가 체크리스트

구축기준	확인결과(✓)					
	우수 (5점)	양호 (4점)	보통 (3점)	미흡 (2점)	불량 (1점)	해당 없음

<6. 도급·용역·위탁 시 안전보건 확보>

[6-1] 도급·용역·위탁 시 사업장 선정

- | | | | | | | |
|--|--|--|--|--|--|--|
| ①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조치능력과 기술에 관한 평가 기준·절차를 마련하고, 이에 따라 평가·선정이 이루어지는지를 주기적으로 점검 실시(반기 1회 이상) | | | | | | |
| ② 도급·용역·위탁 시 도급·용역·위탁 등을 받는 자의 안전보건을 위한 관리비용에 대한 검토 기준 마련 | | | | | | |

[6-2] 안전보건 확보

- | | | | | | | |
|--|--|--|--|--|--|--|
| ① 도급·용역·위탁 시 사전에 유해·위험물질의 유해성·위험성, 유해·위험 작업에 대한 주의사항 등 안전보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 따라 정보를 제공하며 수급인이 제공받은 정보에 따라 안전보건조치를 하였는지 확인 | | | | | | |
| ②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자신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안전 및 보건 시설의 설치 등 필요한 안전 및 보건조치 실시 | | | | | | |
| ③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 실시
* 협의체, 순회점검, 안전보건교육 지원 및 실시 확인,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방법 훈련, 위생시설 이용의 협조, 같은 장소에서 작업 시 관계수급인 등의 작업시기·내용 조정 및 안전보건조치 확인, 합동 안전·보건점검 | | | | | | |
| ④ 안전보건 확보대상이 소속 근로자와 수급인뿐만 아니라 사업장 내에 방문하여 관리감독 하에 지속적인 작업을 하는 외부인을 포함한 모든 구성원인지 여부 | | | | | | |

<7. 정기적 평가 및 개선>

[7-1] 성과 평가 및 체계 점검·개선

- | | | | | | | |
|---|--|--|--|--|--|--|
| ①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성과평가하기 위한 절차 수립 | | | | | | |
| ②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및 안전보건총괄책임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목표 및 세부계획에 따라 성과평가 실시(반기 1회 이상) | | | | | | |
| ③ 안전보건관리체계 평가 및 점검 결과 문제점 및 개선방안(개선시기, 담당, 예산·인력 배정안 등)을 마련하고 경영층에게 보고하고 근로자에게 전파 | | | | | | |
| ④ 안전보건관리체계 운영에 관한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 연도 목표 설정 및 실행계획 수립에 반영 | | | | | | |

IV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14조 (이사회 보고 및 승인 등)	○ 상시근로자 500명 이상을 사용하는 회사 및 공사순위 상위 1천위 이내의 건설회사의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 보고	1,0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57조 (산업재해 발생 은폐 금지 및 보고)	○ 산업재해 발생 보고 ※ 재발 방지계획서 등 작성 3년 보관 - 사망 시: 지체 없이 전화 및 팩스 보고 (고용노동부 관할지청) - 3일 이상의 휴업재해 발생 시: 관할지청에 1달이내 산업재해조사표 보고	은폐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보고: 1,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34조 (법령 요지게시)	○ 산업안전보건법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 규정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37조 (안전표지의 부착 등)	○ 사업장의 유해 또는 위험한 시설 및 장소에 경고, 비상 시 조치 안내 등의 안전, 보건표지를 설치하거나 부착하여야 함 ※ 시행규칙 별표 6 참조 금지/경고/안내/지시/관계자외 출입금지 표시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15조 (안전보건 관리책임자)	○ 사업장을 실질적으로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에게 해당 사업장 안전보건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도록 선임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16조 (관리감독자) 제17조 (안전관리자) 제18조 (보건관리자) 제9조 (안전보건담당자)	○ 상시근로자의 인원과 건설공사의 규모별 관리감독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담당자를 지정하거나 선임 (대행기관 위탁 가능) ○ 작업반장, 생산과장 부장 등 관리감독자에게 안전점검 등 업무를 수행케 해야 함	각 500 만원 이하 과태료
제38조 (안전조치)	○ 위험기계·기구, 설비 위험 방지: 프레스·리프트크레인·동근톱 등 방호조치 ○ 전기·기타 에너지로 인한 위험 방지: 접지, 누전차단기 설치 등 ○ 추락·붕괴·낙하·비래 위험 방지: 안전난간 설치, 안전모·안전벨트 착용 등 ○ 굴착·하역·벌목·조작·운반·해체·중량물 취급 등 위험방지 조치: 작업계획서 작성 (중량물 취급, 트럭·지게차 등 차량계하역운반기계) 등	근로자 사망 시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 등
제39조 (보건상의 조치)	○ 분진, 밀폐공간작업, 사무실오염, 소음 및 진동, 이상기압, 온·습도, 방사선, 근골격계부담작업, 화학물질 등에 기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조치 - 방독마스크·방진마스크·귀마개 등 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휴게시설, 밀폐공간 프로그램 등 조치	
제63조 (도급인의 안전보건 조치)	○ 안전보건에 관한 협의체 구성 및 운영, 작업장의 순회점검 등 안전보건관리 조치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하는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지도와 지원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제66조 (도급인의 관계 수급인에 대한 시정조치)	○ 도급인이 수급인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행위 시정을 위해 필요한 조치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58조 (유해한 작업의 도급금지)	○ 도급작업, 수은·납·카드뮴, 제련·주입·가공·가열 작업 도급금지 ○ 허가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사용하는 작업 도급금지	10억원 이하 과징금
제29조 (안전보건 교육)	○ 정기안전보건교육: 비사무직(일반) (12시간/매반기), 비사무직(판매업무) (6시간/매반기), 사무직 (6시간/매반기) ○ 채용 시 교육: 일용직 (기초안전보건교육 4시간, 건설업 외 (8시간)) ○ 특별교육: 일용직 (2시간이상), 건설업 외(16시간이상) ○ 관리감독자 교육: 전 업종, 작업반장 등을 관리감독자로 지정, 연간 16시간	500만원 이하 과태료

산업안전보건법 법령 요지

산업안전보건법	주요 내용	벌칙
제80조 (유해·위험기계·기구 등의 방호조치)	○ 유해위험기계 등의 방호조치 실시 - 프레스·전단기·가스집합용접장치·크레인·승강기·리프트·용접기·압력용기·보일러·롤러기·연삭기·목재 가공용 동근톱·동력식 수동 대패·산업용 로봇 등은 방호장치를 하지 않고는 사용하면 안 됨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
제84조 (안전인증)	○ 유해·위험 기계 등의 안전인증 - 프레스·전단기·절곡기·크레인·리프트·압력용기·롤러기·사출성형기·고소작업대·곤돌라·기계톱(이동식) 등은 의무 안전인증대상 기계·기구로서 제조자는 안전인증을 받아야 함 (사용 사업주는 근로자들이 안전인증 받은 제품만을 사용토록 해야 함)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제93조 (안전검사)	○ 유해위험기계 등의 안전검사 실시 - 프레스·전단기·크레인(2톤이상) 리프트·압력용기·곤돌라·국소배기장치·원심기·화학설비·건조설비·롤러기·사출성형기 등은 2년마다 안전검사를 받아야 함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0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작성 및 제출)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자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화학물질 중 유해인자 분류기준에 해당하지 않는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 별도 제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2조 (물질안전보건자료의 일부 비공개 승인 등)	○ 영업비밀과 관련되어 화학물질의 명칭 및 함유량을 비공개하려는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승인 시에는 대체명칭 및 대체함유량을 기재 - 사전 승인 시 비공개 타당성, 대체자료의 적합성, MSDS의 적정성 확인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18조(유해위험 물질의 일부 제조 등 허가)	○ 유해 화학물질 제조 사용 시 노동부관할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 - 나프틸아민, 비소, 염화비닐, 베릴륨 등 허가대상물질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 벌금
제114조 (물질안전보건 자료 작성, 비치 등)	○ 화학물질 등 사용 시, 저장·제조 시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게시 ○ 화학물질의 용기·포장 등에 경고표지 부착 및 근로자에게 교육 실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5조 (작업환경측정)	○ 최근 2회 연속 소음 80dB 이상, 화학물질, 분진, 고열 등에 근로자가 노출되는 사업장은 작업환경측정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8조의2 (휴게시설의 설치)	○ 모든 사업장에 휴게시설 설치 - 상시근로자 10인 이상으로 청소원, 환경미화원, 아파트경비원, 건물경비원 직종 근로자 2명이상 사용하는 사업주	1,5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29조 (일반건강진단) 제130조 (특수건강진단 등)	○ 일반건강진단-사무직은 2년에 1회, 비사무직은 1년에 1회 ○ 특수건강진단-소음·분진·화학물질·고열 등 노출 근로자 (6개월~2년에 1회) ○ 배치전건강진단: 신규채용, 작업 전환 시 특수건강진단 대상업무에 종사할 경우 실시	1,000만원 이하 과태료
제164조 (서류의 보존)	○ 산업재해 발생기록, 관리책임자·안전관리자·보건관리자·안전보건관리담당자 및 산업보건의 선임에 관한 서류, 화학물질 유해위험성 조사 서류, 석면조사 서류, 작업환경측정·건강진단 서류 등 (3~30년간 보관)	300만원 이하 과태료

V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안전보건교육 교육과정별 교육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4] <개정 2023. 9. 27.>

1. 근로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제28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1) 사무직 종사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가)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매반기 6시간 이상
		나) 판매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근로자 외의 근로자	매반기 12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초과 1개월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4시간 이상	
	3) 그 밖의 근로자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근로자	1시간 이상	
	2) 그 밖의 근로자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제39호는 제외한다)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2시간 이상	
	2)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 제39호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8시간 이상	
	3) 일용근로자 및 근로계약기간이 1주일 이하인 기간제 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자 : 별표 5 제1호라목에 해당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한정한다.	가)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나)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마. 건설업 기초 안전·보건교육	건설 일용근로자	4시간 이상	

비고

- 위 표의 적용을 받는 “일용근로자”란 근로계약을 1일 단위로 체결하고 그 날의 근로가 끝나면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계속 고용이 보장되지 않는 근로자를 말한다.
- 일용근로자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받은 날 이후 1주일 동안 같은 사업장에서 같은 업무의 일용근로자로 다시 종사하는 경우에는 이미 받은 위 표의 나목 또는 라목에 따른 교육을 면제한다.
-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위 표의 가목부터 라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해당 교육과정별 교육시간의 2분의 1 이상을 그 교육시간으로 한다.
 - 영 별표 1 제1호에 따른 사업
 - 상시근로자 50명 미만의 도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 근로자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가목에 따른 해당 반기의 정기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원자력안전법 시행령」 제148조제1항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정기교육
 -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 「화학물질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제4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
- 근로자가 「항만안전특별법 시행령」 제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신규안전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나목에 따른 채용 시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원자력안전법 시행규칙」 제138조제1항제2호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을 받은 때에는 그 시간만큼 위 표의 라목에 따른 특별교육 중 별표 5 제1호라목의 33.란에 따른 특별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

1의2.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제26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정기교육	연간 16시간 이상
나. 채용 시 교육	8시간 이상
다. 작업내용 변경 시 교육	2시간 이상
라.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 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2.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교육 (제29조제2항 관련)

교육대상	교육시간	
	신규교육	보수교육
가. 안전보건관리책임자	6시간 이상	6시간 이상
나. 안전관리자, 안전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다. 보건관리자, 보건관리전문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라.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마. 석면조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바.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8시간 이상
사. 안전검사기관, 자율안전검사기관의 종사자	34시간 이상	24시간 이상

3. 특수형태근로종사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제95조제1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시간
가.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	2시간 이상(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에 노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1시간 이상 실시하고, 특별교육을 실시한 경우는 면제)
나. 특별교육	16시간 이상(최초 작업에 종사하기 전 4시간 이상 실시하고 12시간은 3개월 이내에서 분할하여 실시가능)
	단기간 작업 또는 간헐적 작업인 경우에는 2시간 이상

비고 영 제67조제13호라목에 해당하는 사람이 「화학물질관리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안전교육을 받은 경우에는 그 시간만큼 가목에 따른 최초 노무제공 시 교육을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4. 감사원 성능검사 교육 (제131조제2항 관련)

교육과정	교육대상	교육시간
성능검사 교육	-	28시간 이상

VI

안전보건관련 서식



안전·보건·건설 등 분야별 각종 서식 모음

이 책자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에 분야별 주요 서식자료를 안내하고 있습니다. 사업장에서 필요로 하는 더 많은 분야별 서식은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알림마당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자료위치 **안전보건공단** <https://kosha.or.kr> 🔍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서울광역본부** ➔ **알림마당자료**

▶ 분야별 각종 서식 모음

- 1) 산업안전분야 관련 (ex, 경영책임자의 안전 및 보건확보 의무이행점검표 등)
- 2) 산업보건분야 관련 (ex, 질식재해예방 자율점검표 등)
- 3) 건설안전분야 관련 (ex, 안전관리비 사용계획서 등)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30호서식]

산업재해조사표

※ 뒤쪽의 작성방법을 읽고 작성해 주시기 바라며, []에는 해당하는 곳에 ✓ 표시를 합니다. (양쪽)

I. 사업장 정보	①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자등록번호			
	② 사업장명		③ 근로자 수			
	④ 업종		소재지 (-)			
	⑤ 재해자가 사내 수급인 소속인 경우(건설업 제외)	원도급인 사업장명		⑥ 재해자가 파견근로자인 경우	파견사업주 사업장명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번호)	
	건설업만 작성	발주자		[] 민간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		
		⑦ 원수급 사업장명		공사현장 명		
		⑧ 원수급 사업장 산재관리번호 (사업개시 번호)				
	⑨ 공사종류		공정률		공사금액 백만원	

※ 아래 항목은 재해자별로 각각 작성하되, 같은 재해로 재해자가 여러 명이 발생한 경우에는 별도 서식에 추가로 적습니다.

II. 재해 정보	성명		주민등록번호 (외국인등록번호)		성별 [] 남 [] 여	
	국적 [] 내국인 [] 외국인 [국적:]		⑩ 체류자격:]		⑪ 직업	
	입사일		년 월 일		⑫ 같은 종류업무 근무기간	
	⑬ 고용형태		[] 상용 [] 임시 [] 일용 [] 무급가족종사자 [] 자영업자 [] 그 밖의 사항 []			
	⑭ 근무형태		[] 정상 [] 2교대 [] 3교대 [] 4교대 [] 시간제 [] 그 밖의 사항 []			
	⑮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III. 재해 발생 개요 및 원인	⑮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사망여부		[] 사망					
	⑰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⑰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⑰ 상해종류 (질병명)		⑯ 상해부위 (질병부위)		⑰ 휴업예상 일수		휴업 [] 일	

IV. ⑳ 재발 방지계획	발생일시		[]년 []월 []일 []요일 []시 []분		
	발생장소				
	재해관련 작업유형				
	재해발생 당시 상황				
	㉑ 재해발생원인				

※ 위 재발방지 계획 이행을 위한 안전보건교육 및 기술지도 등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니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경우 오른쪽에 ✓ 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즉시 기술지원 서비스 요청 []

작성자 성명

작성자 전화번호

작성일

년

월

일

사업주

(서명 또는 인)

근로자대표(재해자)

(서명 또는 인)

() 지방고용노동청장(지청장) 귀하

재해 분류자 기입란 (사업장에서는 작성하지 않습니다)		발생형태 □□□ 기인물 □□□□□	
		작업지역·공정 □□□ 작업내용 □□□	

210mm×297mm [백상지 (80g/m²) 또는 중질지 (80g/m²)]

개인보호구 지급대장

번호	성명	개인보호구 종류					지급일	서명
		안전화	보안면	귀마개	마스크	기타		

안전작업 허가서			<input type="checkbox"/> 화기작업 <input type="checkbox"/> 고소작업 <input type="checkbox"/> 기타작업	<input type="checkbox"/> 중량물작업 <input type="checkbox"/> 굴착작업	<input type="checkbox"/> 밀폐공간작업 <input type="checkbox"/> 전기작업
신청부서 (업체명)		직책		성명	(서명)
허가요청기간	월 일 시부터			시까지	
작업내용				작업장소	
장비투입				작업인원	
작업별 사전체크 항목 『안전조치 사항』					
화기작업		굴착작업		밀폐공간작업	
1. 불꽃, 불티 비산방지조치		1. 전기동력선 안전한 배치조치		1. 산소농도 측정 *산소 18~23.5%	
2. 압력조정기 부착 및 작동 상태		2. 제어용 케이블의 안전성 유무		2.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일산화탄소 30ppm 미만, 황화수소 10ppm 미만	
3. 주위 인화성물질을 제거 상태		3. 지하배관의 파악 여부		3. 2인 1조 작업 유무	
4. 소화기 비치 유무		4. 출입금지 표시판 설치		4. 환기 및 배기장치 조치	
5. 전격방지기의 정상 가동 상태		5.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5. 출입금지 표시판 설치	
6. 작업장소 환기		6.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6. 연락수단의 적정 유무	
7. 가연성 및 독성가스농도 측정		7. 작업장 주변 정리정돈 상태		7. 개인보호구 착용 상태	
8. 화재감시자 배치		8. 작업자의 자격 여부 확인 상태			
고소작업		중량물작업		전기작업	
1. 2인 1조 작업 유무		1. 감독자 지정 및 상주 여부		1. 작업안내 표시판 설치	
2. 추락위험 방호망 구비 상태		2. 로프의 상태(파단 및 소손)		2. 작업자의 자격 여부	
3. 사다리의 파손 여부		3. 작업 신호자 지정 여부		3. 접지 및 방전 여부	
4. 이동식 비계 안전인증 유무		4. 적재물 이동 경로의 적정성		4. 정전작업 전로 개폐 시건	
5. 작업지시대의 작동 상태		5. 관계자 외 출입통제 조치		5. 기타 조치사항	
6. 안전모 착용 상태					
7. 안전대(2m 이상 시) 착용 상태					
요청부서(업체) 요청 사항					
작업관리 부서 (협력업체 포함)	확인사항	<input type="checkbox"/> 현장 확인 결과 이상없음 <input type="checkbox"/> 보완사항 보완 후 작업 (내용:)			
	확인자	소속	직책	성명	(인)
허가관리 부서 (안전보건 주관부서 또는 작업주관부서)	허가내용				
	허가자	소속	직책	성명	(인)


<h1>안전보건교육일지</h1>	결 재	담당	부서장	대표

작성(교육)일자: 20 년 월 일 작성자:


교육의 구분	1. 채용시 교육 2.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3. 특별안전보건 교육 4. 정기안전보건 교육 5. 관리감독자 교육 6. 기타()교육 <small>* 교육과정 및 교육대상별 교육시간 안내 참조</small>						
교육인원	구분	계	남	여	교육미실시사유		
	교육 대상자수						
	교육 실시자수						
	교육 미실시자수						
교육과목							
교육내용							
교육실시자 및 장소	성명	직명		교육 실시장소		비고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연번	소 속	성 명	서 명
1				8			
2				9			
3				10			
4				11			
5				12			
6				13			
7				14			

TBM(Tool Box Meeting) 회의록(양식)							
TBM 일시	20 년 월 일 : ~ : 작업날짜와 동일함 (□ 예, □ 아니오)						
작업명							
작업내용							
TBM 장소				위험성평가 실시여부	□ 예, □ 아니오		
잠재위험요인				대책 (※ 제거 → 대체 → 통제 순서 고려)			
1				1			
2				2			
3				3			
중점위험요인	선정	※잠재위험요인 1 ~ 3 중 중요위험 1개를 선정하여 기재함					
	대책						
TBM 리더 확인		· 소속:	· 직책:	· 성명:	(서명)		
■ 작업 전 안전조치 확인 ※ 위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안전조치 여부 재확인							
잠재위험요인(중점위험 포함)				조치여부	'아니오' 인 경우 조치 내용		
1				□ 예, □ 아니오			
2				□ 예, □ 아니오			
3				□ 예, □ 아니오			
■ 작업 전 일일 안전점검 시행결과							
※ 위험요인 중 조치가 되지 않은 사항, 작업자의 TBM 내용 숙지여부 중점체크							
■ 작업 후 종료 미팅(중점대책의 실효성)							
■ 참석자 확인 ※TBM에 참석하지 않은 작업자를 확인하여 미팅 참석 유도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이름	서명


비상사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명 : 산업재해 발생 시			
단계	시간	주요내용	비고
상황전파	h:00+01	[최초발견자] 상황전파 - 최초발견자는 무전기, 유선, 휴대폰을 이용해서 장소와 환자 상태를 소속 관리감독자 및 사무실에 신속히 연락(비상연락망 공유/숙지 신속 연락)	
응급조치	h:00+02	[복구구호반: 구호담당자] 응급조치 - 현장에 비치된 구급함에서 지혈대, 압박붕대를 이용해 지혈하고 부상부위를 심장보다 높게 유지 - 환자의 상태에 따라서 적절하게 조치	
사고현장 처리	h:00+10	[대피반출반] - 사고현장은 최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기까지 그대로 보존 - 2차 재해 등의 우려가 있을 경우 사진촬영, 상황 기록 등의 증거 자료 확보 후 위험원을 보호 - 관계자 외에는 출입 통제조치	
이송	h:00+10	[복구구호반: 구호담당자] 구호 및 후송 - 지정병원에 환자의 상태 및 병원 도착예정 시간을 통보하고 사고자를 이송 - 구급차가 필요한 경우 요청 후 이송	
사후관리		비상대응조직 해체, ~ 해원진 조사 및 재발방지 대책 수립	


비상사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명 : 화재사고·사무실 근무시		
순서	대응체계도	대응시나리오
재발 방지	원인파악/재발 방지대책 수립	[안전보건협의체 소집대응] - 정확한 사고원인 파악 및 재발방지대책 수립 - 사고와 관련된 법 유권해석 및 대책 수립
사고 처리	사고수습, 복구: 119소방대, 안전 관리자	[출동소방대 및 안전관리자] - 소화기, 소화전 관리, 소방장비 정리 및 사고 수습 - 소손, 파손, 소각 잔재물의 제거 및 회수 처리 - 발생 폐기물의 적정 보관 및 위탁처리
상황보고 및 상황인계 (119 담당자)	119 담당자에게 상황보고 및 인계 ■ 안전관리 부서장에게 상황보고 ■ 소방대 지시이행	-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 후 상황 판단하여 병원에 후송 - 출동소방대에서 조치 - 소방대에게 경위보고를 하고 상황인계 및 협조 - 출동소방대원 및 디지털엠포이어 담당자의 지시 사항 이해
환자발생	응급조치 ■ 119소방대 인계	- 환자발생 시 응급조치를 실시한다 · 주변근무자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초기대응	초기소화 ■ 119소방대 인계	- 주변에 가장 가까이 있는 모든 소화기 및 소방장비 동원 초기진압 실시 · 주변근무자 및 인근 사무실 근무자 · 소방대가 도착하면 현장을 인계한다.
상황신고 (119 구조대)	응급신고 : 인근 소방대 ■ 주변통제 및 대피	“00부서 홍길동입니다. 현재 00팀 현장에 화재가 발생 하였습니다.” - 침착하게 정확한 위치 및 상황을 알려 준다.
최초 발견자	화재발견 ■ 상황전파 ■ 주변근무자 상황전파	“불이야, 불이야”를 큰소리로 외쳐 주변작업자 및 동료에게 화재가 발생했음을 알림

비상사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명 : 추락사고 대응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 ~ 00:01 추락사고 발생 /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 ~ 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료 직원 등이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출혈이 심하면 지혈하고, 쇼크를 막기 위해 담요 등으로 보온 조치 • 119 구조대에 추락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골절이 있으면 그 부위를 부목으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 • 외상이 있으면 소독 및 필요한 연고 약을 상처에 바르고 거즈 또는 붕대로 상처부위를 보호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 ~ 00:10 상황 보고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공장입니다. 비계에서 고소작업 중 몸의 균형을 잃고 직원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외상 임시 치료 및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 환자 병원 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비상사태 시나리오 (예시)

 시나리오 명 : 질식, 감전재해 대응시			
시간 및 상황	조치사항	담당	비고
00:00 ~ 00:01 질식/감전 사고 발생 /환자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 물탱크에서 밀폐공간 출입작업 중 직원이 산소결핍으로 질식 사고 발생 ● (감전) 전기실에서 정전작업 중 제3자가 전원을 투입하여 작업 중인 직원이 감전 ● 사내 방송 또는 비상경보로 비상상황을 전파하고 지원 요청 		
00:01 ~ 00:06 환자 구조 119 구조대 신고 환자 응급조치 2차 재해방지 조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질식) 동료 직원 등이 공기호흡기를 착용하고 재해자 구조 ● (감전) 동료 직원 등이 전원을 차단하고 재해자 구조 ● 호흡 정지 여부를 확인하고 인공호흡과 심폐소생술 실시 ● 119 구조대에 질식사고 발생상황을 신고 ● 119 구조대 도착 시 현장으로 안내하고 필요시 지원 ● 2차 재해가 발생치 않도록 현장에 출입 통제하고 표지판을 게시하는 등 필요한 안전조치 실시 		
00:06 ~ 00:10 상황 보고 현장 보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기관 등 상황 보고 “○○기업입니다. 우리 회사 물탱크에서 질식사고가 발생하여 119 구조대에 구조를 요청하고 현재 직원이 심폐소생술 등 필요한 응급조치를 했습니다.” ● 현장 보존 조치 - 사고 현장 주위에 아무도 출입하지 못하도록 울타리를 치고 재해 발생 원인 조사 종료 시까지 현장을 보존 		
00:10 ~ 환자 병원 후송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19 구조대 도착하여 응급조치 후 병원으로 후송 		

근골격계부담작업 체크리스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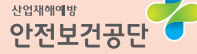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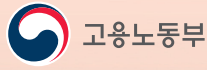
사업장명		조사 일자		조사자	
공정명		공정 내용			

구분											
노출 시간	하루에 총 4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	-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노출 빈도	-							하루에 총 10회 이상	하루에 총 25회 이상	분당 2회 이상	시간당 10회 이상
신체 부위	손, 손가락	목, 어깨, 손목, 손, 발꿈치	어깨, 팔	목, 허리	다리, 무릎	손가락	손	허리	손, 무릎	허리	손, 무릎, 발꿈치
작업 자세 및 내용	집중적인 자료 입력 작업 (마우스, 키보드 사용)	같은 동작 반복작업	· 머리 위의 손 · 팔꿈치가 몸통으로 부터 들림 · 팔꿈치를 몸통 뒤쪽에 위치	구부리거나 비틀	쭈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힘	한 손가락 집기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 무릎아래 / 어깨 위에서 들기 · 팔을 뻗은 상태에서 물건을 드는 작업	물건을 드는 작업	반복적인 충격
무게	-					· 1kg 이상의 물건 · 2kg 이상에 상응하는 힘	· 4.5kg 이상의 물건 · 동일한 무게의 힘	25kg이상	10kg이상	4.5kg이상	-

단위 작업 명												



X



온열질환 예방수칙



1

화창한 여름, 14시 휴식시간

나는 고령노동부의 고드래곤!

고드래곤~ 어쩔 날씨가 작년 여름보다 더 더워진 것 같지?

응 맞아. 오늘도 폭염주의보 떴어..

그나저나 안젤이는 어디갔지?

어둡 너한 녀석... 황제 안드네...

*폭염주의보 : 최고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2

나는 안전보건공단 안젤이!

안젤아! 일한지 1시간도 넘었어! 쉬어야해!

응 그래서 얼음물 가져왔어!

그래 이럴 땐 시원한 물이 필수지, 얼린 여기로 들어와~

3

어둡, 이제 좀 살겠다

좀 괜찮아? 이런 무더위에는 열사병에 걸리기 쉽기 때문에 미리미리 예방해야 해

열사병 예방수칙 첫번째! 물! 규칙적으로 시원하고 깨끗한 물 챙겨 마시기!

규칙적으로 물을 마실 수 있도록 시원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해 주세요~

4

열사병 예방수칙 두번째! 그늘! 일하는 장소에서 가까운 곳에 그늘진 장소를 마련하기!

휴게시설에 온도기(18~28도) 유지를 위해 필요시 냉방기를 설치해 주세요

그늘 그늘

그늘막은 햇볕을 완전 차단할 수 있는 재질로 선택하고 작업자들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공간이어야 해

5

마지막 세번째! 충분한 휴식!
특히 오늘처럼
폭염 특보가 내려졌을 때에는
매시간 휴식을 꼭 취해야해!

- ▶ 폭염특보 발령 시 1시간 주기로 10~15분 이상 규칙적으로 휴식
- ▶ 무더위 시간대 (14시~17시)에는 휴식을 부여하여 옥외작업 최소화

6

브로비~ 몸이 안좋은 분이 계셔서
지금 퇴근 조치를 시키려고 하는데~,
오후 작업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아!

그럼요~ 저는 충분히
쉬어서 괜찮아요!
제가 할게요!

7

※ 작업자가 건강상의 이유로 작업 중지 요청 시 즉시 조치

작업 시에는
건강과 안전이 최우선!

이렇게 혹서기 대비를
철저히 하더라도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온열질환이 발생할 수 있어요

동료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질환이 의심된다면 신속하게
응급처치를 실시해주세요~!

8

온열질환이 발생한 경우

<p>주요증상</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온 38℃ -쓰러짐(피로감, 근육경련) -두통 및 불편감 	<p>의식유무 확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이름을 부르거나 두드림 -옆구리 꼬집음
<p>의식없음</p>	<p>119 구조요청</p>
	<p>병원으로 후송</p>

9

경과를 관찰해 봐도 되겠다는 판단이 내려진 경우,

<p>조치 및 경과관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시원한 장소로 이동 -옷을 헐렁하게 하고 시원하게 할 -수분섭취 및 휴식 	<p>의식 없거나 증상 개선 없음</p> <p>119 구조요청</p> <p>병원으로 후송</p>
<p>종료</p>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강상태 수시 확인 -귀가조치 권고(유선 모니터링) 	

10

자, 오후 작업 시작합니다~

슬슬 일어나 볼까~

일하러 가즈아!

그래도 쉬니까 훨씬 낫다.
오늘 다들 조심해서
마무리까지 잘 해보자

혹서기
온열질환 예방수칙!
잘 지켜봅시다~!

VII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안전보건표지 스티커 모음

안전보건표지 스티커는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알림마당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위치 **안전보건공단** <https://kosha.or.kr> 🔍 → **공단소개**

→ **지역본부 및 지사** → **서울광역본부** → **알림마당자료**



미끄러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미끄러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미끄러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미끄러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손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손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손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손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떨어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떨어짐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다리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사다리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허리조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허리조심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끼임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위험장소경고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위험장소경고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베임·찔림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베임·찔림주의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전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감전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상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화상주의



고용노동부

산업재해예방
안전보건공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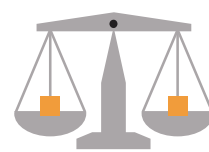
중량물 취급주의!

무게 : kg

무게중심 :



왼쪽



가운데



오른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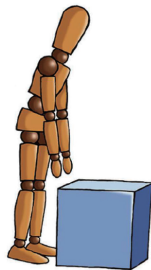
※ 해당하는 곳에 “○” 표시 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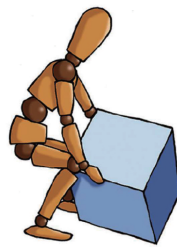
올바른 작업자세 및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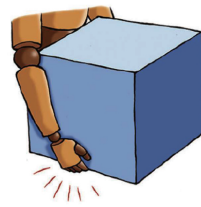
1 무게중심을 확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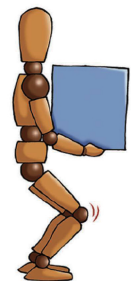
2 가까이 선다



3 쫓그리고 앉는다



4 안정되게 잡는다



5 다리를 이용해 들어올린다

🚨 사다리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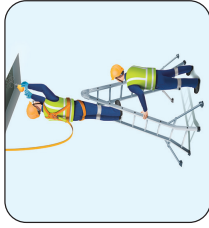
이것만은 꼭 지키세요!



안전모
쓰기



안전대
걸기



반드시
잠금



고용노동부

신용재예방
안전보건공단

이동식 사다리 안전 점검표

확인

경작업 등 특별한 경우만 사용

확인

펼쳐서 사용하는 경우 승·하강 이동 통로만 사용
A형 사다리에서만 작업

확인

3.5m 초과 시 작업반으로 사용 금지

확인

작업 높이가 바닥으로부터 2m 이상~3.5m 이하인 경우
최상부 발판 및 그 하단 디딤대에서 작업 금지

확인

작업 높이가 사다리보다 높을 때 벽돌, 박스 등으로 놓이기 금지
평탄·견고하고 미끄럼이 없는 바닥에 설치

확인

미끄럼 방지장치
남아짐 방지장치
미끄럼·남아짐 방지 조치

확인

2인 1조 작업

확인

안전모 착용



건물관리업 안전보건길잡이 2024

발행일 2024년 6월

발행처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장

하형소

[안전보건공단]

이사장

안종주

서울광역본부장

고광재

공단발간번호 2024-서울광역본부-306

문의처 안전보건공단 서울광역본부 안전문화팀 T 02-6711-2814

